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청소행정과-5854 |
| 등록일자 | 2016.2.24. |
| 결재일자 | 2016.2.25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주무관 | 청소행정팀장 | 청소행정과장 | 복지문화국장 | 부구청장 | |
| 이경미 | 김태화 | 강현섭 | 김효길 | 전결 02/25 주윤중 | |
| 협조자 | | | | | |

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

(단위 : 개소)

| 계 | 오수처리시설 | 정 화 조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소 계 | 500인조 이상 | 500인조 미만 |
| 22,703 | 568 | 22,135 | 1,273 | 20,862 |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적정 처리

- 설치신고, 변경신고, 용도변경 및 증설, 준공검사, 개선명령, 폐쇄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

-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·점검
- 비정상 운영시 신고 처리 및 운영기구 설치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

-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·점검 등 관리 강화 (200인조이상 펌핑형 시설)
-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업체에 의한 안전점검 (년중 상시)
- 안전망 설치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 추진

- 악취 유발 정화조 및 공기공급장치 설치 추진 : 안내 홍보물 발송, 설치권고, 조건부여
- 하수악취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 (민원다량 발생지역 20지점 선정관리)

○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 관리

- 연2회 지도·점검, 분기회 종사원 교육, 주민설문 조사, 분뇨수거량 전자계량시스템 도입 등

2016. 2 . 24 .

강 남 구
(청 소 행 정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| 확인 및 적시사항 |
|--|--|
| 관련 규정 및 근거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수도법, 통합지도 점검 규정(환경부 훈령제1155호) ▪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▪ 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(서울시물재생시설과-2366,,2016,2,16) |
| 추진 경위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·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구민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|
| 예산 사항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· 해당없음 |
| 수혜자 및 범위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· 해당없음 |
| 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|
| 타 기관 사 례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· 자치구별 자체 계획 |
| 전문가 자 문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· 해당없음 |

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

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나아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.

■ 근거

- 하수도법,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(환경부 훈령 제1155호)
-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
- 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(서울시물재생시설과-2366, 2016.2.16)

I 추진방향

-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
 - 설치 및 변경신고,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증설, 신축 시 준공, 폐쇄
 -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(500인조 이상) 지도·점검, 내부청소
-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
 - 정화조 청소시 청소대행업체 주관 안전점검, 정화조 안전망 설치
 - 분뇨수집운반업체 안전점검 의무화
(2015.6.15. 청소업체 위탁 계약서에 의무 조항 명시하였음)
-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
 - 개인하수처리시설(200인조 이상, 펌핑식)지도·점검 및 악취유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권고 설치, 민원다량 악취지역(20개소) 모니터링
- 분뇨 수집·운반 대행업체 관리
 - 연 2회 지도·점검, 분기 1회 종사원 교육, 주민설문조사

II

현황

개인하수처리시설 : 22,703개소

(단위 : 개소)

| 계 | 오수처리시설 | 정 화 조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소 계 | 500인조 이상 | 500인조 미만 |
| 22,703 | 568 | 22,135 | 1,273 | 20,862 |

○ 오수처리시설

| 계 | 50인조 미만 | 50이상 ~100미만 | 100이상 ~200미만 | 200이상 ~500미만 | 500이상 ~1000미만 | 1,000이상 ~3000미만 | 3000이상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568 | 223 | 198 | 101 | 41 | 4 | 0 | 1 |

○ 정 화 조

| 계 | 50인조 미만 | 50이상 ~100미만 | 100이상 ~200미만 | 200이상 ~500미만 | 500이상 ~1000미만 | 1,000이상 ~3000미만 | 3000이상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22,135 | 8,895 | 5,102 | 3,539 | 3,326 | 776 | 417 | 80 |

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

(단위:개소)

| 계 |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 |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| 가축분뇨 설계·시공업 |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5 | 2 | 3 | 8 | 1 | 1 |

III

2015년 추진 실적

개인하수처리시설(분뇨) 청소량 : 총442,039 m³

(단위:m³)

| 구 분 | 계 | 정익산업(주) | 한성성업(주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442,039.16 | 230,511.25 | 211,527.91 |
| 1분기 | 106,735.84 | 53,288.34 | 53,447.5 |
| 2분기 | 120,416.57 | 59,146.56 | 61,270.01 |
| 3분기 | 109,005.09 | 58,100.23 | 47,781.43 |
| 4분기 | 109,005.09 | 59,976.12 | 49,028.97 |

■ 개인하수처리시설(분뇨)처리 수수료 납부 : 2,004,218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기 간 | 처 리 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| 2,004,218 | |
| 2014. 12. ~ 2015. 02. | 424,816 | 2015. 1분기 |
| 2015. 03. ~ 2015. 05. | 610,115 | 2015. 2분기 |
| 2015. 06. ~ 2015. 08. | 467,199 | 2015. 3분기 |
| 2015. 09. ~ 2015. 11. | 502,088 | 2015. 4분기 |

※ 처리단가 : 2013년-kl당4,124원, 2014년-kl당4,776원, 2015년-kl당4,606원, 2016년-kl당5,027원

■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 : 총795건

(단위 : 건)

| 계 |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| 개인하수처리 시설설계·시공업 | 정화조 준공신청 | 정화조 설치신고 |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| 정화조 폐쇄신고 |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| 정화조 청소 연장신청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795 | 2 (변경2) | 9 (폐업1, 변경8) | 242 | 351 | 1(준공1) | 64 | 5 | 120 |

■ 정화조 청소 안내 및 공기주입장치 설치 등

- 청소 안내엽서 및 발송봉투 제작 : 안내엽서 22,000매 제작
- 청소 사전 안내서 발송(청소기한 2개월, 1개월 전) : 40,395건 발송
- 청소 촉구서 발송(청소기한 1개월 후) : 2,699건 발송
- 청소 미이행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: 7건 280만원
(※ 미이행자 : 1회 촉구 후 미이행시 과태료(10만원~70만원) 부과)
- 공기주입장치 설치 : 총 98개소
- 1,000인조 이상(의무설치) 11, 1,000인조 미만(독려설치) 58,
시범사업 29개소 (삼성동 145~158번지 일대, 대치동 942~957 일대)

※ 연도별 공기주입장치 설치 내역

| 구 분 | 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
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설 치 량 | 262 | 45 | 51 | 68 | 98 |
| 서울시목표량 | 148 | 38 | 38 | 36 | 36 |

- 청소 주민만족 설문조사 추진 : 1,200명 완료

IV

세 부 추 진 계 획

1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적정 처리

| 종 류 | 근 거 | 대 상 | 방 법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설치 변경 신고 | 하수도법 제34조 제38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설치시 설계도서, 배수계통도,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대장 징구 변경신고시 변경설계도서, 변경증명서류 징구 정화조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.시공업자가 설치 정화조 산정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과대 설계 방지 (지나친 여유율 배제 10%이내) |
| 증설 | 하수도법 제35조 시행령 제25조 | 증축 및 용도변경 건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(환경부고시 제2015-6호, 15.7.31.)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정화조 용량 초과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배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 또는 증설 - 1.5배 이하인 경우 :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- 1.5~2배 이하인 경우: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|
| 준공 검사 | 하수도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0,31조 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공사완료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일 이내 현장조사 후 준공검사조서 작성 확인결과 통지 제조업체 제품(PE, FRP) 설치시 재질검사 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 배출장치, 방충망, 악취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준공된 시설은 관리카드 작성.보관 및 시스템입력 (서울환경행정시스템) 설치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조치 |
| 개선 명령 | 하수도법 제4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36조 |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.관리기준 에 부적합 시설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선기간(3월 이내)을 정하여 시설소유자에게 개선명령 개선완료보고(개선명령 이행시 7일 이내)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, 미이행시 고발 조치 등 |
| 폐쇄 신고 |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| 처리시설 폐쇄 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쇄방법 설명서, 오수배출관로 약식도면,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확인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서로 같음 |

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

■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·점검

- 대상 :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조 이상 정화조
- 방법 : 통합지도·점검규정(환경부훈령 제1155호)에 따라 실시
- 점검주기
 - 1,000인조 이상 : 연 1회 이상 (총 486개소)
 - 500인조 ~ 1,000인조 : 2년마다 1회 이상(총 766개소)
 - ↳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1차 점검 후 세부점검 필요시 담당자 2차 점검
 - 방류수 수질기준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 점검 (10월)
 - ↳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
- 중점점검사항
 -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 유입 배출
 -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 배출
 -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
 -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
- 결과조치
 - 점검 내용 중 지적사항 발생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
 - 청소 미실시 과태료 부과
 - 악취측정 결과 필요시 공기공급장치 설치 적극 독려

【 운영시 금지사항 】

-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
-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

■ 비정상 운영 신고 처리

- 비정상운영 신고 대상
 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, 변경, 보수시
 -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시, 단전·단수시
 - 기후의 변동 또는 이물질 유입시, 천재지변·화재 등

○ 처리절차

- 신고 : 개선기간, 개선내용, 설계도서 및 비정상운영사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
- 통지 : 개선기간을 정하여 통지
- 검사 : 개선기간 만료 시 7일 이내 개선완료 상태 확인

■ 운영기구 설치

○ 대상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

- ※ 공동주택 범위 (단,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는 제외)
 - 30세대이상 공동주택,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 -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
 -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

○ 관리업무

- 공동 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·유지
- 운영기구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간주

○ 신고절차

- 준공 적합통지일로부터 110일 이내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 지정
- 대표자 지정 10일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건물소재지, 건축연면적, 소유자,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,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신고

3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

■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업체 안전점검

- 점검기간 : '16.1월 이후 계속 (년중 상시)
- 점검대상 :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(약 23,000개소)
- 점 검 자 : 분노 수집·운반 대행업체(한성성업, 정익산업)
- 점검방법 : 내부 청소시 안전상태 점검 병행(청소+안전점검)

■ 분노 수집 · 운반업체 안전점검 의무화 체계 구축

- 청소업체 위탁 계약서 계약조건에 안전점검 의무화 조항 명시

■ 개인하수처리시설 격자형 안전망 및 안전보호망 설치 추진

- 추진기간 : 2016. 1. 1 ~ 12. 31
- 대 상 :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망 설치가 되지 않은 시설, 옥외신규 설치 정화조 (공사장, 학교, 유치원 등)
- 추진방법 : 안전망 및 안전보호망 설치 안내(공문) ⇒ 개선명령(권장) ⇒ 설치(유도)
- 조치사항 : 안전망 설치, 맨홀 주위 안전보호망 설치 권장 등

■ 안전사고 예방 홍보

- 안전관리 책자 배부 (3,000매)
- 청소 안내문에 정화조 뚜껑에 격자형 안전망 설치 안내

4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

■ 내부청소 사전 안내

- 대 상 :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 · 정화조)
- 사전안내서 발송 : 청소일 2개월, 1개월 이전
 - 청소기한, 청소량, 예상요금, 청소업체 연락처 등 안내
- 청소주기 : 연 1회 이상
 - 증설·용도변경 건물의 전체오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의 150% 이내 : 9개월 1회
 - 증설·용도변경 건물의 전체오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의 200% 이내 : 연 2회

■ 내부청소 미이행자 조치

-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소 촉구 발송
 - 청소시기(촉구서 도착일 1월 이내) 및 과태료 부과사항 등 명시
- 청소 촉구 이후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·관리자
 - ⇒ 10만원~70만원 과태료 부과

■ 분노 수집 ·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및 청소 기준

- 분뇨는 수집·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청소 수수료 부과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(오수 포함)에 따라 청소 수수료 부과

※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요금

| 구분 | 부과기준 | 부과금액 | 비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분뇨 | 18L | 240 | | |
| 개인하수처리시설 | 기본 | 0.75m ³ | 19,500 | |
| | 초과 | 0.1m ³ 당 | 1,380 | |
| | 야간할증 | 청소요금 | 7.0% | 야간청소시간은 18:00부터 익일 06:00까지로 하되, 하절기(6~8월)에는 19:00부터 익일 06:00까지로 한다. |
| | 청소장비지하설치할증 | 청소요금 | 5.0% |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. 단,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 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|

- 오수·분뇨 정화조 관리 메뉴얼 (정화조의 내부청소 기준) 준수
- 스크م(Scum)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
- 정화조 상단부위의 스크미 단단하여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화조 내의 물(2부패조 등)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입회인(사용자, 관리자 등)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 외부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수증에 확인을 받을 것(보관)
- 수집 후 쇄석(碎石), 플라스틱 등 여재(濾材)를 깨끗한 물로 세척

5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추진

■ 악취유발 정화조 등 공급장치 설치 지속 추진

- 추진방향
 - 악취 유발 정화조 : 공기공급장치 설치 권고
 - 신규 정화조 : 건축 인·허가시 조건부여
- 대상 :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의 200인조 이상 펌핑식 부패탱크 정화조 (200인조 미만 악취 발생 민원 정화조 : 설치 권고)
- 추진방법
 -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정화조 : 설치 권고
 - 신규 1000인조 이상 정화조 : 의무 설치
 - 신규 200인조 ~ 1000인조 정화조
 - 건축물 인허가시 공기공급 장치 설치 조건부여

- 조건부여 내용

건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강제배출 시 하수도 맨홀 내에서 악취 물질(황화수소)이 5ppm 이내로 발생하도록 공기공급 장치 또는 동등한 효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.

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·점검과 병행, 공기공급장치 설치 권고

- 추진기간 : 16. 4. 1 ~ 12.31
- 점검대상 : 200인조 이상 펌핑식 개인하수처리시설
- 점검주기 : 월1회 (10개소)
- 점검방법 :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·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
- 점검내용
 - 악취점검 : 설치신고, 정상가동, 청소실시 여부, 악취발생여부 등
 - 안전점검 : 부식·균열·파손, 맨홀 고정상태,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안전망 설치 여부,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등
- 결과조치 : 공기공급장치 설치 적극 독려 및 안전조치

■ 하수악취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

- 모니터링지점 : 민원다량 발생지역 20개소 (치수과 협의, 장소 선정)
- 점검주기 : 분기1회
- 시행방법 : 맨홀내 악취측정기 부착 24시간 연속측정
- ※ 선정방법 : 주기적 악취측정을 통한 악취관리 필요 지역의 맨홀 선정 (24시간 연속측정 가능개소)

■ 정화조 악취 저감 홍보 활동

- 200인조 이상 및 전기설비가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
 - ↳ 자발적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협조문서 발송
- ※ 안전사고 예방 홍보 병행 추진

6 분뇨 수집 · 운반 대행업체 관리

■ 업체 현황

○ 관할구역 및 계약기간

| 구분 | 정익산업(주) | 한성성업(주) | 계약기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할구역 | 청담, 삼성, 역삼, 도곡1, 개포, 일원본, 일원, 수서 | 신사, 논현, 압구정, 대치, 도곡2, 세곡, 자곡, 율현 | 2015.6.15. ~2018.6.14.(3년) |

■ 지도 · 점검 실시 (연2회) ☞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

- 업체점검, 작업현장점검 구분실시
- 허가기준 준수여부, 각종일지의 적정 기록여부,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
 - 시설·장비,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,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,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

■ 종사원 교육 (분기 1회 이상)

- 청소지연, 불친절, 팁 요구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
 - ☞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, 교육 결과 징취

■ 주민설문 조사 활성화

- 청소대행업체 : 청소 현장에서 설문조사 후 (100건/월) 구청 제출

■ 분뇨 수집 · 운반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관리강화

- 서울시 실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합동점검(분기1회)에 대비하여 분뇨 수집 운반차량의 청결상태 유지 및 악취 예방을 위하여 수시 독려 및 정기 지도 점검
 - 점검내용 : 외관상태, 악취, 탈취기 교체 여부, 장비 관리상태 등
 - 결과조치 : 서울시 지적사항 발생 시 행정 조치

■ 분뇨수거량 전자 계량시스템 도입 운영

- 전자감응식 수위계를 부착하여 계량의 정확성 확보 및 민원 분쟁 사전방지
- 기존차량 단계적 보급 추진

7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련업체 관리

■ 업체 현황

| 구 분 | 설계·시공업 | 관리업 | 가축분뇨 설계·시공업 | 가축분뇨시설관리업 |
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개소수 | 8 | 3 | 1 | 1 |

■ 지도·점검 실시 (10월) ☞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

-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·시공업체 집중 관리
-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
- 설계·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,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
- 부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조치
- 기술인력 교육 실시여부
-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, 실험기기 확보상태
- 준수사항의 이행실태여부 등

V 행 정 사 항

■ 분뇨 수집·운반업체 실무자 회의 개최 (연4회)

■ 추진실적 제출 :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(매월 10일)

- 관리실적, 지도점검결과, 공기주입장치 설치실적, 안전관리 실적 등

■ 모니터링 지점 20개소 선정 제출 :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('16.4.30)